

변경대비표(일반및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클래스신설	환매대금 지급일	결산	변동성	기타
1	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주 1)	-	-	-	
2	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주 2)	○	-	-	
3	미래에셋달리우량중장기채권증권투자신탁(H)(채권)	-	○	-	-	5), 6)
4	미래에셋달리우량중장기채권증권투자신탁(UH)(채권)	-	○	-	-	5), 6)
5	미래에셋미국달리우량회사채증권투자신탁 1 호(H)(채권)	-	○	-	-	-
6	미래에셋미국달리우량회사채증권투자신탁 1 호(UH)(채권)	-	○	-	-	-
7	미래에셋미국달러채권증권투자신탁 1 호(UH)(채권)	-	○	-	-	
8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하이일드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-재간접형)	-	-	○	○	-
9	미래에셋글로벌 EMP 인컴배분증권투자신탁 1 호(UH)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-	○	○	-
10	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2 호(주식)	-	-	○	○	
11	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월지급식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(선택형)	-	-	○	○	-
12	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○	-
13	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○	○	-
14	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	-	-	○	
15	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○	
16	미래에셋자산배분 TDF2025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 재간접형)	-	-	-	○	-
17	미래에셋자산배분 TDF2035 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-	-	○	-
18	미래에셋자산배분 TDF2045 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 재간접형)	-	-	-	○	-

2. 변경 사항:

- 1) 클래스 신설
- 2)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
- 3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4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5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6) 법 개정사항 반영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4년 03월 27일 (수)

4. 변경 내용:

- 1) 클래스 신설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>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u>주1)</u>

		주2)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<신설>	주1) 주 2)
제37조(보수)	<신설>	주1) 주 2)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 환매수수료	<신설>	주1) 주 2)
제1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	
제2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	
제 2 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[종류형 구조]		
제2부. 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		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

주1)

구분	가입자격	판매보수(%)	선취 판매 수수료	환매 수수료
종류 C-P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	0.84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종류 C-Pe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가입자	0.42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종류 C-P2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	0.74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종류 C-P2e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	0.37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
주2)

구분	가입자격	판매보수(%)	선취	환매
----	------	---------	----	----

			판매 수수료	수수료
종류 C-a	20억 이상 가입자	0.30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
2)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

펀드명	변경 전		변경 후	
	기준가 적용일	환매대금 지급일 (기준시간 이후)	기준가 적용일	환매대금 지급일 (기준시간 이후)
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투자신탁(H)(채권)	T+2	<u>T+6 (T+7)</u>	T+2	<u>T+5 (T+6)</u>
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투자신탁(UH)(채권)	T+2	<u>T+6 (T+7)</u>	T+2	<u>T+5 (T+6)</u>
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투자신탁 1호(H)(채권)	T+2	<u>T+6 (T+7)</u>	T+2	<u>T+5 (T+6)</u>
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투자신탁 1호(UH)(채권)	T+2	<u>T+6 (T+7)</u>	T+2	<u>T+5 (T+6)</u>
미래에셋미국달러채권증권투자신탁 1호(UH)(채권)	T+2	<u>T+6 (T+7)</u>	T+2	<u>T+5 (T+6)</u>
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투자신탁 1호(채권)	T+4	<u>T+8 (T+9)</u>	T+4	<u>T+7 (T+8)</u>

3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<투자비용>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 기구 보수포함) 업데이트</u>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)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</u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<u>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</u>
제 5 부. 4.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-	<u>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</u>

4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[표준편차*]

펀드명	변경 전 등급 표준편차	변경 후 등급 표준편차	변경 전(%) 표준편차	변경 후(%) 표준편차
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<u>2</u>	<u>3</u>	<u>15.23</u>	<u>10.79</u>

*2024.3.1 시행일 이전 결산기가 도래한 증권신고서(정정신고서 포함) 적용

[97.5% VaR**]

펀드명	변경 전 등급 표준편차	변경 후 등급 97.5% VaR	변경 전(%) 표준편차	변경 후(%) 97.5% VaR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하이일드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-재간접형)	<u>3</u>	<u>4</u>	<u>10.77</u>	<u>10.04</u>
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투자신탁1호(UH)(주식혼합-재간접형)	<u>3</u>	<u>4</u>	<u>11.45</u>	<u>17.34</u>
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2호(주식)	<u>1</u>	<u>2</u>	<u>49.63</u>	<u>49.20</u>
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0.38</u>	<u>30.80</u>
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월지급식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(선택형)	<u>2</u>	<u>3</u>	<u>15.72</u>	<u>24.79</u>
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9.73</u>	<u>30.07</u>

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- 재간접형)	3	3	<u>10.79</u>	<u>13.02</u>
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	<u>2</u>	<u>4</u>	<u>15.42</u>	<u>18.51</u>
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- 재간접형)	2	2	<u>17.08</u>	<u>21.54</u>
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<u>3</u>	<u>5</u>	<u>10.08</u>	<u>9.50</u>

****2024.3.1 시행일 이후 결산기가 도래하는 증권신고서(정정신고서 포함)부터 적용**

5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6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 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<생략></u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<생략></u>	<삭제>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생략></u>	2. <생략> 나. <삭제>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②~③ <생략>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②~③ <생략>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

		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-	--	--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